

韓國水協運營의 問題點과 對策方向*

金 敬 浩**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 in Korea

Kim, Kyoung - Ho

目 次	
I. 序 論	2. 初期의 水協組織問題
II. 水協發足以前의 水産團體	3. WTO時代의 水協組織 및 運營上의 問題點
III. 水協發足 및 그 展開過程	4. 漁村契組織의 目的과 限界
1. 水協의 組織體系	5. 水協中央會의 組織과 運營問題
2. 水協의 機能	V. 結 論
3. 水協組織의 變遷과 漁業生産	參考文獻
IV. 水産業環境條件의 變化와 水協의 對應	Abstract
1. WTO體系와 水産業	

I. 序 論

1993年 12月 15日 UR이 妥結되었다는 것은 資本主義 經濟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GATT는 1948년에 발족할 당시 自由로운 國際貿易의 확대에 의한 雇傭增大, 나아가서 完全雇傭을 표방하였으나 貿易紛爭 調整에 있어서 拘束力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후 各國의 國際貿易의 摩擦을 조정하기 위하여 7次에 걸쳐 GATT會議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기존의 GATT體制가 가지고 있는 基本的 問題를 해결하고 强制的 拘束力을 갖춘, 즉 監視機構를 가진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UR協商에 WTO를 결부시키게 한 것이다.

UR協商의 妥結에 의해서 모든 商品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資本, 勞動, 技術의 이동이 국제적으로 自由로워진다는 것은 곧 국제간에,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개별기업간에 경쟁력을 중심으로 無限競爭時代에 突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UR협상 후의 WTO體制 下에서는 各國이 종래 행해오던 補助金政策과 같은 對內的 産業政策까지도 WTO의 規制對象에 포함된다

* 本 研究는 1995年度 釜山女子大學校 校內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釜山女子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는 것이므로, 國內企業이 外國의 企業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여야 한다.

水産物도 앞으로 最少市場接近方法에 의한 猶豫期間이 지나면 價格이 저렴한 各國의 水産物이 國內市場에 無制限으로 유입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競爭力이 약한 韓國의 水産業이 입는 타격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미 현재 中國을 비롯한 各國의 저렴한 水産物이 大量輸入되고 있으나, 1997年 7월까지 殘存 輸入制限을 철폐하고 10年以內에는 關稅를 제로(零)水準으로 함으로써 完全 自由化가 실현된 後를 생각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漁業生産性을 향상시켜 국내수산업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水産業의 전면적인 개편등 적절한 水産政策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企業생산자 조직인 水産業協同組合, 특히 水協中央會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사업전반에 걸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시장과 가격 支配力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수협의 信用, 지도활동을 통하여 개방체제하의 수협의 대응력을 높이고록 해야 할 것이다.

Ⅱ. 水協發足以前의 水産團體

우리나라에 있어서 他律的이었기는 하나¹⁾ 近代法에 근거를 둔 水産團體는 隆熙二年(1908年) 11月 7日에 公布되고 1909年 4月 1日부터 시행된 韓國漁業法에²⁾ 의거하여 조직된 巨濟閑山加助漁業組合과 巨濟閑山毛麓田組合이 그 嚆矢라 할 것이다. 이것이 1910년에 합병되어 巨濟閑山加助漁業組合이 되었고, 다시 1912년에는 漁業組合規則에 따라 巨濟漁業組合이 설립됨으로써 여기에 흡수되었다.

한편 日本은 1876年 2月 26日의 江華島條約에 의해서 漁業分野에 대한 侵略을 강화하였으며, 이것을 組織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保護助長機關으로서 日本人의 水産團體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것이 1897年 2월에 설립된 朝鮮漁業協會인 것이다. 그 後 다시 日本은 韓國沿近海에 出漁하는 漁民의 居住地의 行政機關에 通漁組合을 조직하게 하고, 그 聯合組織으로서 1900年 5월에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를 조직하게 하였다.³⁾ 日本政府는 이들 조직에 補助金을 지급하여 韓國의 沿近海進出을 장려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侵略政策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後 日本은 1897년에 遠洋漁業獎勵法이 制定.公布되는등 漁業進出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여기에 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하였으므로 朝鮮海漁業組合聯合會는 1903년에 해산되었다.

朝鮮海水産組合은 海外進出의 遠洋漁業者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며, 日本政府는 이를 적극적으로 保護·支援 하였다.⁴⁾ 水産組合의 業務는 (1) 組合員의 保護·取締 및 遭難·救濟, (2) 組合員의 通漁

1) 日本은 1904年 露日戰爭에서의 勝利를 契機로 韓國과의 乙巳保護條約을 강제적으로 締結하고, 이 法에 의거하여 1906년에 統監部를 設置하여 實質的으로 植民地의 支配를 강행하게 되었다. 韓國漁業法은 이같은 統監部의 의도에 따라 제정되었다.

2) 舊韓國漁業法은 1908년에 제정시행 되었으며, 總16條로서 形成되고 同施行細則은 27條가 된다.

3) 이 당시의 日本漁民의 出漁實績는 漁船이 3,000여隻, 漁民은 20,000명에 달하고 收益이 3百萬圓에 이르렀다고 하는 朝鮮時報의 記事를 1899年 12月 14日의 皇城新聞이 報道하고 있다.

4) 朝鮮海水産組合은 本部를 釜山에 두고, 淸津, 元山, 馬山, 木浦, 仁川, 鎮南浦 등에 支部를, 蔚山, 巨濟島, 統營 등에 각각 出張所를 두었다.(최정운,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관한 研究, 수산경영론집 제11권 제1, 2호 합병호, 1980)

出願 및 기타 手續의 代辯, (3) 組合員의 漁業에 관한 通信報告, (4) 組合員의 通信과 貯金 및 換取扱의 代辯, (5) 組合員의 紛爭仲裁調停, (6) 組合員의 風紀矯正에 의한 韓日간의 和親圖謀, (7) 漁獲物販賣에 관한 便益圖謀, (8) 漁船·漁具의 改良 및 保管, (9) 漁場의 調査·探險과 水族蕃殖保護의 圖謀, (10) 通漁에 관한 功績이 있는 者의 表彰 또는 通漁中 특수한 善行을 한 組合員의 褒賞, (11) 기타 組合員의 共同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었다.

日本은 1904年 露日戰爭에서 승리하자 1905年 강압적으로 乙巳條約을 締結하고 統監府를 설치한 以後부터 韓國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統監府는 朝鮮海水產組合을 半官僚의 機構로 개혁하여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漁民의 移住漁村建設과 移住漁民誘致 등 自國民의 韓國內植民을 장려하기 위한 역할까지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組合이 직접 移住漁村을 영위하는 일까지 수행하였다. 뒤에는 統監府의 강요에 의하여 韓國政府가 朝鮮水產組合에 대하여 財政的補助까지 하였다.

이러한 것이 1910年 8月 日本에 의한 韓日合邦이 강행됨으로써 行政·制度全般에 걸쳐 植民地的 收奪을 위한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水產業도 그 例外가 아니었다. 즉 漁業制度의 基本法인 漁業令이 1911年 6月 3日에 制定·公布되었다.⁵⁾ 이 漁業令에 의거하여 地先漁民은 地區別漁業組合을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漁業者, 水產物製造業者, 水產物販賣業者는 業種別로 水產組合을 설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⁶⁾ 이러한 組合은 朝鮮總督府의 認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組合에는 法人格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漁業組合이 漁業을 自營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漁業組合이 失敗할 경우에 組合은 물론 組合員에게도 손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漁村經濟를 위태롭게 하게 되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組合自營을 금지한 것이었다. 漁業組合은 面單位로 설립되었으며 地區內의 漁業者는 組合에 가입해야 한다는 強制的 加入規定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水產組合도 例外는 아니었다.

前記한 朝鮮海水產組合은 1912年 7月에 개편되어 道單位의 朝鮮水產組合으로 改稱되었으나, 다시 1920年에 朝鮮水產會令에 의해서 水產會組織으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中央에는 朝鮮水產會를 各道에는 道水產會가 조직되었다. 朝鮮水產會의 組織目的은 漁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朝鮮全域에 걸쳐 漁業生産뿐만 아니라 이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製造, 販賣, 保管은 물론 漁業關聯施設의 改良·發達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朝鮮水產會는 行政官廳인 總督府와 漁業者의 中間에 介在하여 漁業의 實情과 問題點을 開陳하는 동시에 漁業發展에 필요한 諸般 施策의 實施를 建議하는 등 水產業의 改良·發達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日帝植民地下的 漁業의 발전과 地區別 漁業組合數의 증가에 따라 組合員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道單位의 漁業組合聯合會가 설립되었다.⁷⁾

이러한 추세에 따라 業種別組合인 水產組合도 水產組合規則 第7章의 聯合會에 관한 諸規定을 정

5) 漁業令(1911년)은 本文 29條, 附則 7條로서 구성되고, 漁業令施行規則은 本文 38條, 附則 3條로서 구성되었다.

6) 漁業令 第16條, 第17條, 第18條, 第19條의 4個條에 漁業組合 및 水產組合의 設立에 관한 規定이 明記되어 있다.

7) 漁業組合聯合會는 1930年 12月 29日 慶尙北道漁業組合聯合會를 嚆矢로 全國 12道에 漁業組合聯合會가 組織되었다(최정운, 앞의 논문참조)

비하여 朝鮮魚弱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漁業生産의 증대와 經營規模의 확대 등 漁業의 발전에 따라 漁業組合數가 증가하게 되고 道單位の 聯合會가 조직됨에 따라 長期的인 水産業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全國的 規模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各道의 漁業組合聯合會의 代表와 總督府水産關係官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보게되어, 1937年 5月 29日에 朝鮮漁業組合中央會의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中央會의 사업은 漁業組合, 漁業組合聯合會의 相互連絡, 組合趣旨의 普及, 組合事業에 관한 各種의 調查研究, 共同販賣, 共同購入 등을 실시하여 會員의 사업을 지원하고 水産業의 건전한 발달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상에서 概觀한 바와같이 漁業組合, 水産會, 水産組合으로 三元體制위에 漁業組合聯合會, 水産組合聯合會 등 聯合會組織이 형성되고, 다시 朝鮮漁業組合中央會라고 하는 피라미트型 組織으로 형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水産團體는 機能的으로나 制度的으로 組合構成員의 福利增進이라는 經濟的 目的을 위주로 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各組合이 組合中心으로 운영하는데서 비롯되는 業務의 摩擦과 競爭으로 인하여 綜合的 水産政策의 실시에 있어서 統一性이 결여되어 政策效果의 저하가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것이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으로 擴戰됨에 따라 日本의 소위 戰爭遂行을 위한 國民總力運動의 一翼으로서 水産報國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水産報國의 실천을 위하여 總力を 다하여 漁業生産力을 증진하고, 計劃生産과 計劃配給, 漁村指導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강력한 統制力을 지닌 水産團體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水産團體의 統合이 단행되었다. 즉 종전의 水産會組織이 해체되고 朝鮮水産業會가 조직되어⁸⁾ 그 산하에 漁業組合聯合會와 水産組合이 소속되고 漁業組合은 漁業組合聯合會를 통하여 指導·監督을 받고 諸般業務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概略的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은 韓國에 대한 植民地의 收奪을 감행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工業原資料供給地인 동시에 工業製品의 市場으로 이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水産業은 農業과 더불어 食糧 및 動物性蛋白質의 供給源으로 그 開發과 發展策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漁業制度의 정비와 水産團體의 조직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中日戰爭이 확대되고 太平洋戰爭이 勃發함에 따라 戰時統制經濟의 一環으로 水産團體는 엄격한 官僚統制下에서 末端 行政機關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 당시의 漁業組合의 변천과정을 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漁業組合數는 1945년에 204個組合이 되고 水産人口는 2倍以上, 漁家戶數도 2.7배나 증가되었다. 漁船隻數는 1911년에 13,024隻에서 1940年은 58,885隻으로 4.5배나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日本人中心이기는 하지만 動力化가 1919년부터 진행되어 1940年에는 2,850隻으로 전체의 5%에 해당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1911년부터 1941년까지 指數로 主要漁業經濟指標를 보면 <表 2>와 같다. 30年間 生産數量은 約 17.6倍, 金額으로서는 38倍로 증가하고, 水産人口는 約 2倍, 戶數로는 2.7倍로 그리고 水産關係漁船은 4.5倍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8) 水産團體統合은 1941年 3月 國民總力運動指導委員會에서 指導要綱이 發表된 후 1943년부터 統合問題가 提起되었으며, 1944年 2月에 統合方針이 發表된 2個月後에 水産團體統合이 斷行되었다.(박구병, 최정윤, 한국수산업단체사, 수협중앙회간, 1980 참조)

韓國水協運營의 問題點과 對策方向

<表 1> 漁業組合, 水産人口 및 戶口數推移

年 度	漁業組合(개)	水産人口(名)	漁家戶數(戶)
1911	1	228,208	72,030
1915	41	292,941	78,444
1920	79	390,249	90,675
1925	147	486,612	131,886
1930	204	525,026	154,344
1935	194	349,224	159,750
1940	206	431,212	185,814
1941	206	469,521	192,218
1945	204		
1950	151		
1955	160		
1961	88		

資料：水産廳, 韓國水産史, 1968, p. 368.

<表 2> 主要漁業經濟指標의 推移

(1911年을 100으로본 指數)

年 度	生産高	金 額	水産人口	漁家戶數	水産關係船舶
1911	100	100	100	100	100
1915	420	223	129	109	157
1920	498	649	171	126	203
1925	667	888	213	183	242
1930	1,072	880	230	214	306
1935	1,846	1,421	153	227	369
1940	2,266	3,957	188	257	439
1941	1,755	3,799	205	266	450

資料：水産廳, 韓國水産史, 1968, p. 368.

이와 같이 하여 日帝下의 水産業은 外形的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1939年 總生産額에 대한 産業別 構成比率을 보면 水産業의 生産額이 32,722,568圓으로 8.4%가 되어 農業의 1,548,162,011圓인 39.7%, 工業의 1,498,277,426圓인 38.4%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그리고 水産業의 比重은 1911年의 2.6%에서 1939년에는 8.4%로 3.2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資源狀態의 有利性和 漁獲努力의 強化, 水産物市場의 擴大와 水産金融制度의 改善等 諸要因에 의한 것이나 그러한 것도 漁業組合, 水産組合 등 水産團體의 조직에 의해서 합리화되고 개선, 촉진되어 漁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制度의 整備에 의한 日帝時 水産業의 發展의 성과는 日帝植民政策에 의해서 日本人에 귀속 내지 수탈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Ⅲ. 水協發足 및 그 展開過程

1. 水協의 組織體系

解放以後 美軍政廳은 1945年 10月 9日에 軍政法令을 발표하여 朝鮮漁業令과 그 附屬法令이 계속 有效함을 宣言하였다. 그리고 同年 11月 9日에는 종전의 漁業權⁹⁾을 무효로 하고 일시 水面開放을 의 圖하는 法令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沿岸漁場의 爭奪現象이 벌어져 漁場秩序가 크게 혼란된 적이 있었다. 軍政廳은 이것을 수습하고 漁業秩序를 바로잡기 위해서 1945年 11月 24日 布告令을 발표하여 朝鮮水產業會를 하여금 統制代理機關으로 하고, 漁業組合을 강화, 지원하여 秩序維持의 系統組織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일시적인 漁場開放이라는 宣言에 의하여 발생할 漁業紛糾와 혼란을 막기 위하여 1946年 3月 1日에 漁業取締規則과 施行規則을 발표하여 漁業秩序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1948年 8月 15日에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지 5年後인 1953年 9月 9日에 새로운 水產業法이 그리고 1955年 12月 18日에 水產業法施行令이 각각 制定·公布됨으로써, 日帝의 朝鮮漁業令과 漁業에 관한 臨時措置法이 폐지되고, 여기에 우리나라 水產業에 관한 基本制度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¹⁰⁾

이렇게 성립된 水產業法에 의거하여 1962年 1月 20日에 水產業協同組合法이 제정되고 1962年 4月 11日에 발족하게 되었다.¹¹⁾

여기에 水產業法과 舊漁業令을 비교하면 漁業令이 단순히 漁業을 水面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하여, 水產業法은 水面의 綜合的利用으로서 水產業의 발전과 漁業의 民主化를 도모하며 水產資源을 보호한다는¹²⁾ 三大目的을 명시하였다는 의미에서 水產業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解放以後부터 水協이 발족될 때까지만 해도 韓國經濟는 극도의 窮乏과 혼란상태에 놓여 있었다. 日帝植民地時代의 끝없이 계속된 수탈과 中日戰爭, 太平洋戰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徵用, 志願兵, 報國隊 등으로 漁村의 青年勞動力의 부족은 더욱 生産力을 저하시켜 漁村經濟를 궁핍화시켰다. 解放後에는 38線과 政治·社會的 混亂이 가속화되고 生産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데다가 雪上加霜으로 6·25動亂에 의해 그나마 남아있는 生産施設과 막대한 生産手段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6·25動亂은 38線以北의 漁場의 상실, 4,124隻에 이르는 漁船과 그 위에 40,000여명에 이르는 靑壯年層의 감소등 人的·物的 資源의 손실에 의하여, 生産力은 크게 저하되고 生産高는 현저히 감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6·25의 傷痕이 아물기도 전에 1959年 9月 17日의 사라호颱風은 11,588隻의 漁船에 被害

9) 1945年 8月 9日 이전에 承認된 漁業權을 의미한다.

10) 水產業法(1953)은 第1章 總則, 第2章 漁業의 免許, 許可와 申告, 第3章 遠洋漁業, 第4章 內水漁業(75年 12月 31日 削除), 第5章 漁業權, 第6章 水產製造業의 許可와 申告, 第7章 漁業調整, 第8章 土地와 土地定着物의 使用, 第9章 資源의 保護管理, 第10章 補償과 補助 및 裁定, 第11章 水產調整委員會, 第12章 補則, 第13章 罰則 등 總 94條, 附則 5條로 구성되어 있다.

11) 水產業協同組合法(1962년)은 第1章 總則, 第2章 地區別水產業協同組合 및 業種別水產業協同組合, 第3章 水產物製造業協同組合, 第4章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第5章 會計, 第6章 監督, 第7章 罰則, 第8章 補則 등 總 168條와 附則 14條로 구성되어 있다.

12) 水產業法 第1條 참조.

를 입히고 生産施設, 漁港施設이 12,656個所나 破壞, 流失되는 등 극심한 손해를 입혔으며 人命被害도 532名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日帝時의 가혹한 收奪과 解放後의 經濟的沈滯, 6·25와 사라호颱風 등 侵略과 戰爭, 自然災害라는 三重苦의 악조건에 의해서 漁村經濟는 극도의 궁핍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經濟가 정체상태에 있었으므로 都市人口가 生計를 위하여 農漁村에 歸還내지 逆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 예로서 水産人口가 1946년에 408,369名에서 1960년에는 2배가 넘는 848,275名이 되었고, 1962년에는 114萬名으로 계속 증가하여 1965년에는 1,314,430名, 1967년에는 約 152萬名이 되었다. 이와 같은 漁村의 過剩人口는 漁村經濟의 궁핍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水産業協同組合이 발족하게 된 시기의 韓國經濟와 漁村經濟의 실태는 바로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원래 協同組合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 經濟的 弱者인 消費者, 零細農漁民, 中小生産者들이 孤立分散的인 個別活動에서 오는 不利點을 극복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協同組織에 의하여 大資本家와 中間商人에 對항하고자 하는 自己防衛的 組織이다.

우리나라의 水協組織은 自發的 意識이 낮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政府에 의한 조직이 되었고 政府 財政資金의 높은 비중으로 인하여 他律的 運營이 될 수밖에 없었다.

水協法에 의하여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이 88개,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18개 그리고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各市道에는 9個所의 中央會의 支部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地區別水協의 下部組織으로서 漁村契가 自然部落單位로 조직되었다(<表 3> 참조).

이와 같이 水協中央會를 上部機關으로 하는 水産團體가 日帝時代의 漁業組合과 水産組合 朝鮮水産業會를 대신하여 組織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水産業協同組合이라고 하는 協同組合運動을 표방하여, 形式的으로는 조직과 運營面에 있어서 日帝時代의 水産團體와 상이하는 漁民의 主體性과 自主性이 중시되기는 하였으나¹³⁾ 漁民의 意識水準과 社會經濟的 條件 등 主體的 條件과 客觀的 條件의 未成熟으로 인하여 組織과 運營, 財政面에서 政府에 의한 他律的 依存性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¹⁴⁾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表 3> 道別分布狀況(1962년)

	京畿	忠南	全北	全南	慶南	慶北	江原	濟州	合計
地區別水協組合員數	9	6	4	28	19	9	8	51	88
組合員數	6,212	3,589	1,477	45,927	21,897	13,797	9,934	2,946	112,779
漁村契數	121	156	45	916	447	160	85	99	2,023
漁村契員數	6,783	5,592	1,366	49,751	20,098	13,532	6,952	12,946	117,000

資料: 水産廳, 韓國水産史, 1967.

13) 金仁台·朴九秉, 水産經濟論, 1963, p. 214.

14) 開途國에 있어서 農水産業協同組合은 위로부터의 指導, 監督, 支援에 의해서 推進되게 되나, 이것이 協同組合運動의 本質에서 離脫되는 原因이 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다.

2. 水協의 機能

水産業協同組合이 水産業法 第1條에 따라서¹⁵⁾ 漁民의 協同組織을 촉진하여 그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향상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¹⁶⁾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水協이 그러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組織體인 이상 組織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水協의 機能은 크게 經濟的機能과 非經濟的機能으로 구분할 수 있다. 經濟的機能에는 信用事業, 販賣事業, 購買事業, 利用事業, 共濟事業 등이 있고, 非經濟的機能에는 指導事業과 調查研究事業이 여기에 속한다.

水協은 위의 諸機能을 매개로 하여 組織目的을 달성하고자 소위 水協經營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經營(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은 經營組織體, 單位體 또는 運營體라고 하는 경우와 經營活動, 經營하는 일이라는 機能的인 측면을 일컫는 경우의 二面이 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經營은 技術的 單位體이므로 價値의 形成 내지 增殖을 위한 技術的 過程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生産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둘째, 經營은 動態的인 構成體로서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的인 성격의 反復的 維持 내지 擴大라는 과정을 밟는 구성체인 것이다. 셋째, 經營은 物的, 人的 要素의 구성체로서, 그것은 經營者를 주체로 하는 主體的 組織體인 것이다. 넷째, 人的 要素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協同的 性格을 지니고 다섯째, 主體的 組織에 의한 持續的 經營이라는 점에서 計劃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組織體로서의 經營은 (1) 生産的 性格을 지니고, (2) 合目的 運動過程을 확대, 반복하는 構成체로서, (3) 經營者등 人的 要素를 중심으로한 主體的 組織이기 때문에, (4) 計劃的 性格을 지니고, (5) 協同的 性格을 중시하게 된다.

水協法 第1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水協의 經營도 이상의 다섯가지의 조건을 균형있게 충족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록 水協이 組織目的, 構成主體, 運營原則 등에서 企業經營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마는 그래도 水協經營이 계속적 經營體이고,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향상이라는 長期的 目的이 존재하는 한, 위의 조건을 效果的, 合理的으로 추구하는 것만이 그러한 목적이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經營의 性格과 存立要件을 전제로 水協經營은 前述한 經濟的 내지 非經濟的 機能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다. 經濟事業은 信用事業과 共濟事業의 金融關係事業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특히 信用事業은 一般金融機關에의 접근이 어려운 漁民의 經濟活動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生産活動은 生産要素의 投入에서 그 활동의 결과인 產出物의 販賣에 이르고, 다시 再生産活動을 위해서 市場經濟를 전제로 하여 生産活動이 반복적으로 영위된다. 그러므로 投入에서 產出, 販賣에서 다시 再生産活動을 원활하게 그리고 擴大再生産을 위해서도, 적시에 적절한 資金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金融問題가 항상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實物의 흐름

15) 水産業法 第1條(目的)는 「이 법은 水産業에 관한 基本制度를 定하고, 水面의 綜合的利用으로써 水産業의 發展과 漁業의 民主化를 도모하며, 水産資源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16)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條(目的) 참조.

에 貨幣의 흐름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관계이지마는, 이 단순한 관계가 漁業이라는 經濟分野에서는 간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漁業의 投機的性格과 높은 危險性에 반하여 水産物의 商品의 劣弱性, 經營規模의 零細性, 擔保物의 脆弱性等 一般工業分野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그러므로 制度金融의 流入이 制限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實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漁業의 産業으로서의 속성을 어느정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水協의 信用事業이다. 共濟事業은 資金運用에 있어서 信用事業과는 다르나 組合員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個別的으로나 産業全體로 보아 生産活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販賣事業과 購買事業은 組合員의 經濟活動을 그대로 반영하여 組合員의 經濟活動의 확대와 더불어 확대되어 왔다. 利用事業도 生産關聯의 施設利用은 生産增大와 같이 확대되고 증설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非經濟的事業인 指導事業과 教育弘報 및 調查研究事業이 있으나, 開途國이고 漁村經濟가 침체 내지 궁핍상태에 있고 意識水準이 저위에 있는 社會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하다. 즉 經濟活動의 主體의 條件을 확립한다는 것은 모든 經濟活動, 社會活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調查·研究事業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야 할 분야라 할 것이다. 그것은 水産業이 現代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一産業分野이므로 他産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과 쇠퇴가 좌우될 뿐 아니라, 國際經濟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水産業 그 자체의 現狀과 變化에서 國內經濟의 동향과 國際經濟의 추이를 감안하여, 水産業의 發展方向과 問題點을 모색한다는 것은 水産業이라는 産業自體를 위해서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調查·研究活動은 일반적으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水協經營의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水協組織의 變遷

水協이 발족한지 1996年 現在 35年이 되었다. 그 동안 水協組織은 漁業生産의 발전과 더불어 70年初까지는 확대되어 갔으나 各 漁村의 社會經濟的條件의 차이에 따라 漁村經濟의 추이는 큰 격차를 가지고 변동하여 왔다. 水協組織도 各 漁村經濟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나 經營이 不實하고, 계

<表 4> 水産業協同組合의 變動推移 (단위: 개)

年 度	地 區 別 水 協									業種別水協 合 計
	合 計	京 畿	江 原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962	88	9	8	6	4	28	9	19	5	14
1965	96	10	8	6	4	33	9	21	5	21
1970	105	10	10	6	5	37	10	22	5	21
1975	71	6	8	6	4	19	8	15	5	17
1980	69	6	8	5	4	19	8	14	5	16
1985	56	4	6	6	4	14	8	12	5	16
1990	62	4	7	4	4	16	8	14	6	16
1994	65	4	7	4	4	18	8	14	6	17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統計年報, 各年度.

속적인 赤字運營에 의해서 獨立採算이 어려운 組合은 統廢合되어 정비되었다. 1994年 現在 全國의 地區別 및 業種別水協의 地域別分布狀況은 <表 4>와 같다.

地區別水協이 62年の 88個 組合에서 1970年の 105로 증가하였다가 72年の 統廢合에 의하여 축소되고 그以後는 계속 감소하여 現在 65個組合만 남아 있다. 業種別組合은 17個로 이 중 製造業水協이 2個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았던 全南에서는 70년에 37個所이었다가 現在는 그 절반정도인 18個所로 줄어 들었다.

漁村契도 한때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現在는 62年보다 약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表 5>참조).

組合員의 변동상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水産人口와 漁業從事者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水協組合員이 증가한다는 것은 漁村에 잔류하여 어떤 형태이든 간에 漁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組合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때 150萬에 이르렀던 水産人口가 94年 現在 40萬에도 미달되는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組合數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事情을 의미하는 것이다.

5個年計劃에 의해서 韓國經濟는 급속한 성장을 나타나게 되나, 그러한 産業生産의 확대는 就業機會를 계속 창출하여 雇傭量을 증가시키고 國民所得水準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所得水準의 향상에 의해서 食品消費가 증대되는 동시에 고도화됨으로써 水産物需要가 계속 증가되고, 價格이 상승되는등 漁業生産에 호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經濟全般의 上向運動에 따라서 漁業生産도 크

<表 5> 漁村契의 分布 및 變動推移 (단위 : 개)

年 度	合 計	京 畿	江 原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962	1,786	67	67	125	32	744	154	382	87
1965	-	-	-	-	-	-	-	-	-
1970	2,236	146	86	177	90	1,003	170	465	99
1975	1,650	108	76	114	61	704	157	333	97
1980	1,440	90	65	84	53	642	124	311	71
1985	1,513	76	61	69	52	743	134	296	82
1990	1,598	76	60	70	54	774	136	340	88
1994	1,679	87	62	67	55	809	137	364	98

資料 : 農林水産部, 앞자료, 各年度.

<表 6> 組合員의 變動推移 (단위 : 명)

年 度	合 計	專 業	兼 業	被 傭
1962	63,540	20,837	37,179	5,524
1965	75,803	25,567	43,498	6,738
1970	101,051	31,074	61,918	8,059
1975	114,236	34,196	71,479	8,561
1980	124,461	35,096	82,003	7,362
1985	138,759	40,229	87,450	11,080
1990	153,856	49,219	91,744	12,893
1993	161,047	53,056	93,781	14,210

資料 : 農林水産部, 앞자료, 各年度.

韓國水協運營의 問題點과 對策方向

<表 7> 經濟計劃以後의 漁業生産推移 (단위: M/T)

年 度	漁業生産高	養 殖 高	遠洋漁業
1962	470,187	18,709	57
1965	636,512	91,060	8,563
1970	935,462	119,211	89,621
1975	2,134,976	351,396	565,593
1980	2,410,346	540,564	458,209
1985	3,101,605	787,571	767,030
1990	3,274,506	772,731	925,331
1994	3,445,000	1,072,1266	887,000

資料: 水産廳,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8> 漁業生産指數의 推移 (1962=100)

年 度	漁業生産	養 殖 高	遠洋漁業
1962	100	100	100
1965	135	487	1,303
1970	233	637	13,641
1975	2,135	1,878	86,081
1980	5,126	2,889	69,743
1985	6,597	4,199	116,747
1990	6,964	4,521	140,842
1994	7,327	5,731	135,008

資料: 水産廳, 年次報告書, 各年度.

게 증대되어 <表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급격한 生産推移를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1954年 漁獲高가 28,197톤, 1950年에 216,191톤, 1960年에 342,410톤, 1961年에 435,567톤이었던 것이 5年計劃에 의한 政策的支援에 의해서 70年以後에는 成長速度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漁業生産은 1962年을 100으로 할 때 1994年은 約 7.3倍가 증가되고, 養殖高는 57倍, 遠洋漁業은 1,350倍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表 8>. 이러한 漁業生産의 증가를 위해서 水協組織이 經濟事業과 利用加工事業을 통해서 지원하였다는 것은 <表 9>의 水協中央會經濟事業規模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經濟事業總額의 合計를 취하여 1962年을 100으로 하면 1994年에는 409가 되었다. 이것을 다시 信用事業을 보면 約 903, 購買事業은 883, 販賣事業은 約 400이 되고 利用加工事業은 150이 되고 있다. 漁業生産이 物量的으로 7.3倍가 증가되는데 대하여 水協中央會의 經濟事業 특히 信用事業部門이 900이 넘었다는 것은 通貨價値의 下落 즉, 物價上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水協中央會의 經濟事業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마는 여하튼 漁業生産을 62年에 비해서 94年이 7.4배나 증가시키는데 水協의 經濟事業 특히, 信用事業을 통한 資金供給이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므로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表 10> 참조).

<表 9> 水協中央會 經濟事業의 變動推移

(단위: 百만원)

年 度	合 計	信用事業 (貸出殘額)	經 濟 事 業				
			小 計	購買事業	販賣事業	貿易	利用加工
1962	1,799	21	1,008	212	793	3	
1965	6,366	1,586	3,547	481	3,050	16	
1970	47,528	17,886	10,590	1,141	9,372	76	
1975	140,676	39,572	34,944	14,647	19,739	544	
1980	764,947	188,459	172,075	66,889	74,238	18,886	1,816
1985	1,814,720	514,679	350,095	140,084	149,120	35,880	1,725
1990	3,286,660	1,110,519	325,059	134,668	163,445	17,485	1,575
1994	7,359,377	1,896,082	567,007	187,292	316,821	6,166	4,494

資料: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水協統計調查月報各年度에서 作成.

수산경영론집

<表 10> 水協中央會 經濟事業의 變動推移

(1962=100)

年 度	合 計	信用事業 (貸出殘額)	經 濟 事 業				
			小 計	購買事業	販賣事業	貿 易	利用加工
196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65	354	755	352	227	385	-	533
1970	2,642	852	1,051	538	1,182	-	763
1975	6,341	1,884	3,467	6,909	2,489	-	1,813
1980	4,252	8,974	17,071	31,551	9,362	18,886	6,053
1985	10,008	24,509	37,732	66,077	18,805	35,880	5,750
1990	18,269	52,882	32,248	63,523	20,611	14,485	5,250
1994	40,908	90,290	56,251	88,345	39,952	6,166	14,980

資料 : 水協中央會, 水協統計調查月報, 各年度에서 作成.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1962년부터 지금까지 34년간 經濟開發計劃에 의해서 漁業生産을 비롯한 漁業經濟指標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한 生産量의 증가는 市場經濟를 통해서 漁民의 所得增大에 나타나게 되나, 그 과정에 水産業協同組合이 개재하여 生産資金, 營漁資金, 漁船建造資金 등을 공급하고 販賣事業을 통하여 漁獲物의 適正價格實現과 流通의 원활을 기하여 漁業의 再生産活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生産은 1962년에 비해서 約 7.4배가 증대되었으나 信用事業은 903배나 크게 증가되었다. 이 기간중 沿岸海漁業의 生産量은 불과 3.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7.4배라는 증가를 가능케 한 것은 遠洋漁業과 養殖漁業의 成長이 1,350배와 54.6배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生産의 급격한 증가는 政府의 水産振興計劃이 추진됨에 따라 漁場의 外延의 擴大와 漁船의 大型化, 動力化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다. 伊·佛借款에 의한 遠洋漁業의 開發은 沿岸漁業과 近海漁業에 치중되어 있었던 漁業의 生産構造가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養殖漁業의 비약적인 발전도 가세되어 이러한 경향을 한층 촉진시키게 된 것이다. 漁船隻數와 噸수는 1962년에 비하여 31,887척, 779,123톤이나 크게 증가하여 隻當噸수는 62년의 3.54톤에서 94년에는 12.2톤으로 3.45배나 大型化되었다. 그리고 動力船의 비중도 1959년의 7.3%에서 1994년에는 91%로 그 관계가 완전히 전도되었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漁獲努力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水協의 經濟事業 특히 信用事業規模의 확대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유의할 것은 隻當生産量은 1962년이 10.3톤이던것이 1994년에 44.9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나 噸當生産量은 1962년에 2.9톤인데 대해서 1994년에도 3.7톤으로 거의 정체상태이며, 沿岸海漁業의 漁船만을 보면 隻當生産량이 29.7톤이고 噸當生産量은 3.3톤으로 거의 33年前과 같은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漁船의 大型化, 動力化에 의해서 航海距離와 操業日數가 연장되어 生産이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噸當 生産量으로 평가하게 되면 거의 정체적이라는 것은 資源問題와 관련시켜 보아야 할 과제이며, 이미 어떤 過剩操業問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沿岸海漁業에 투입되고 있는 漁船의 噸當 生産량이 3.3톤이었으므로, 다시 沿岸漁業에 投入되고 있는 漁船의 噸當 生産량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沿岸漁業經營體가 1994年 現在 66,066個 經營體로서 總漁業經營體의 78%에 해당된다. 이들이 地區別水協을 조직하여

韓國水協運營의 問題點과 對策方向

現在 水協中央會의 가장 많은 會員을 구성하고 있다. 漁村人口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沿岸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地位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경제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65년에 1,314千名이었던 水産人口가, 1975년에는 150萬을 고비로 現在는 그 3분의 1도 못되는 40萬정도이므로 一經營體當 漁場利用面積이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漁船의 噸當生産量은 거의 정체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漁獲努力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生産效果는 극히 미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漁民의 生産活動이 所得面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漁家所得의 추이를 5년간격으로 33년간에 걸쳐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1962년을 100으로하면 1994년은 955배가 되므로, 農家所得의 299나 都市勤勞者所得의 211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가까이 높다. 그러나 기준년도인 1962년의 漁家所得의 절대수준이 農家所得의 26%, 都市勤勞者所得의 18.5%밖에 되지 않는 低水準이었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經濟開發5個年計劃期間에 開發政策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財政赤字를 무릅쓰고 通貨量을 擴大供給하여 인플레이政策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60년부터 80년까지의 物價上昇率은 全國都賣物價로 볼 때 1962~1981년간 每年 20%에 육박하고 있다(<表 12> 참조).

그리고 1975년부터 1991년까지 韓國物價上昇率이 444.3%이나¹⁷⁾ 62년부터 75년까지는 보다 빠른 상승율을 나타낸 시기임을 감안할 때 62년부터 94년까지의 33년간 10배에서 15배가량의 物價上昇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만일 이것을 10배라고 한다면 1994年度の 漁家所得을 10분의

<表 11> 漁家所得의 推移와 農家및都市勤勞者所得과의 比較 (단위: 원, %)

	漁 家 所 得		農 家 所 得		都 市 勤 勞 者 所 得	
	所 得 額	指 數	所 得 額	指 數	所 得 額	指 數
1962	17,900	100.0	67,885	100.0	96,500	100.0
1965	63,300	353.6	112,200	165.3	112,560	116.6
1970	193,000	1,078.2	255,804	376.8	381,240	395.1
1975	847,000	4,731.8	872,933	1,285.9	859,320	890.5
1980	2,596,000	14,502.7	2,693,000	3,967.0	3,205,000	3,321.4
1985	4,869,000	27,200.1	5,736,000	8,449.6	5,172,000	5,359.6
1990	10,023,000	55,994.4	11,026,000	16,242.2	11,319,000	11,729.5
1994	17,110,000	95,586.5	20,316,000	29,927.0	20,416,000	21,156.5

資料: 水産廳.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12> 經濟開發期間別 物價上昇率 (단위: %)

	全國都賣物價	서울消費者物價	輸 入 物 價	GNP디플레이터
1962 ~ 66	16.2	16.1	18.6	19.7
1967 ~ 71	7.9	11.4	4.6	14.9
1972 ~ 76	20.3	15.9	16.5	20.2
1977 ~ 81	19.8	18.6	12.5	-
1982 ~ 86	1.6	3.6	-	4.6
1987 ~ 91	3.3	7.0	6.1	6.7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譜, 各년도.

17)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92., p. 534.

1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推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도 漁家所得이 여전히 農家所得과 都市勤勞者所得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33年前과 다를 바가 없으며, 現物價水準에서 農漁民生活이 우리나라 社會階層으로 볼 때 가장 하위에 속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情報化時代나 世界化나 하는 흐름속에서 과연 밝은 전망과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계층일 것이라는 의문의 생각은 그러한 장기간의 經濟統計에서 읽을 수 있다.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條에 「이 법은 漁民과 水産業製造業者의 協同組織을 촉진하여 그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增強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漁民은 兼業化의 경향을 높임으로써 生計補充을 기도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漁家所得統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水産業의 産業의 特殊性에 기인된 것도 있으나 零細經營과 生産技術의 저위, 資源造成과 育成을 위한 對策의 미비, 미약한 研究調查活動, 國內經濟 및 國際經濟活動에 대한 감각의 결여, 協同組合理念의 결여 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비추어 볼 때 전통적으로 水協中央會運營은 環境要因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즉, 단기간의 生産增大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長期的 眼目에서 綜合的 對應策을 수립 실시한다는 것은 결여되고 있었다.

IV. 水産業環境條件의 變化와 水協의 對應

1. WTO體制와 水産業

第2次大戰後 先進諸國 특히 美國은 國際貿易의 확대와 市場開放을 위하여 國際經濟協力機構를 組織, 運營해 왔다.¹⁸⁾ 美國에 의해서 조직된 戰後의 世界經濟秩序는 EC와 日本 등 巨大經濟圈의 등장과 新興工業國의 부상으로 인하여, 世界市場에 있어서 美國의 절대적인 우위가 도전받게 됨에 따라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GATT 7次會議까지 개최하였다. 드디어 8次會議인 UR協商이 타결됨으로써 全面的인 貿易自由化가 실현되게 되고, 그 실현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WTO體制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對外依存的 經濟體質로 성장·발전해 온 이상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UR協定에 조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WTO體制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UR協定妥結의 내용은 첫째, 市場接近을 확대하기 위하여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철폐 내지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市場開放의 범위도 製造工業의 商品뿐만 아니라 모든 經濟的 去來를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公正하고 자유로운 國際貿易을 보장하기 위한 貿易關聯의 各種 制度와 規範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넷째, GATT를 대신할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출범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18) 金仁台, 韓國經濟發展의 評價, 釜山水産大學論文集 49輯, 1993, pp. 7~9.

19) 소위 Bretton - Woods System 「브레튼 - 우드體制」라고 일컫는 것으로 IMF, IBRD, GATT體制를 總體的으로 表現하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는 各國의 人的, 物的資本과 資金, 技術과 知的所有權, 情報의 이동에는 국경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經濟活動과 交流는 요즘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世界化, 自由化, 開放化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의 모든 經濟的 去來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이 표현속에 農水産物, 특히 水産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歷史的으로 水産業에 다수의 漁民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야 할 産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競爭力의 관점에서 零細經營이 일반적 특징으로 되어 있는 현상태에서 自由化한다는 것은 그 귀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最少市場接近方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輸入을 확대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完全自由化는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政府는 2001년까지 42兆원을 투입하여 農漁村構造改善을 위한 投資計劃을 발표하였다.²⁰⁾ 여기에 農漁村道路鋪裝이나 上水道普及 등 生活關聯施設은 제외하고 漁業에 직접 관련된 주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계획되고 있다.

上記 構成을 보면 대단히 概括的인 것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各分野와 項目別로 구체화 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한 産業으로서의 水産業의 內容과 形態, 漁村經濟圈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그려보기가 쉽지 않다. 여하튼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國內外的 漁業環境條件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거기에 대응하여 漁業을 維持·發展시키는 동시에 漁業에 종사하는 漁民의 所得水準이 他産業에 종사하는 僱傭자의 所得水準과 균형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 産業의 就業者로서 계속적으로 그 生産活動을 平生의 職業로서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여기에 漁民 개개인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協同組織이 필요하게 되며, 바로 여기에 水協 특히, 水協中央會의 역할이 극히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1993	1998	2004
1. 어업인구 및 소득			
1) 어업인구(만명)	41	34	30
2) 어가소득(만원)	1,443	1,860	2,530
2. 수산물수급			
1) 국내수요(만톤)	284	320	350
2) 공급(만톤)	334	340	360
자급율(%)	117	110	103
3) 수출(만톤)	100	100	100
4) 수입(만톤)	49	80	90
3. 어업기반시설			
1) 지정어항	407	510	640
2) 어선세력(만톤)	92	90	83
3) 종묘배양장(개소)	13	20	50

2. 初期의 水協組織問題

水協의 조직은 水協法에 따라²¹⁾ 地區別水協은 市, 郡의 行政單位를 業務區域으로 하고, 業種別水協은 全國을 業務領域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組合組織에 필요한 法定最少定員數는 地區別水協은 200名, 業種別水協은 20名以上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²²⁾ 동일한 業務地域內에 複數의 漁協이 조

20) 經濟企劃院, 外務部, 財務部, 農林水産部, 商工資源部, WTO出帆에 對備한 政策對應, 1994. 11月. p. 43.

21)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6條 第2項 및 第17條 第1項.

22)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8條 第2項 및 第74條 第1項.

직되는 등 자연히 다수의 零細組合이 量産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그것이 1962년부터 1971년까지 水協이 亂立되어 1970年경에는 地區別水協이 105個所, 業種別水協이 21個所나 되었다. 그 결과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3年間 赤字組合이 67個組合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1970년에는 105個地區別組合의 4분의 1이상인 27個組合이 赤字를 나타내게 되었다. 同年 地區別水協의 財務構造에 나타난 것을 보면 負債比率이 89.1%, 自己資本比率이 10.9%이었다는 것은 組合의 資本調達面에서 他人資本依存도가 非正常的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經營狀態로서는 赤信號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의 自己資本不足을 메우기 위한 높은 財政資金의 比率에서 유래된 것이나, 그 後 經營收支에서 赤字를 나타낸 地區別水協이 京畿, 忠南, 慶北에서 속출하게 되고 나머지 地域에서도 겨우 收支가 균형되는 정도에 머무는 事例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組合의 信用事業과 販賣事業, 購買事業, 利用加工事業等 經濟事業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훨씬 미달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그것의 하나는 組合員의 經營規模의 零細성과 다른 하나는 組合規模 자체의 矮小性이라고 하는 두가지 요인에 기인되는 것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解放以後의 社會的 經濟的인 혼란과 6·25動亂에 의한 靑壯年層의 많은 人命被害 및 漁船等 生産手段의 상실, 1959年 9月の 사라호颱風으로 인하여 그나마 잔존한 漁船과 漁業施設마저 유실과 파손 등으로 漁村經濟가 극도로 궁핍화된 상태이었던 때 때문에, 組合員인 漁民의 生産活動이 침체되고 零細성을 면치 못한것은 당연하다. 원래 組合의 信用事業과 기타 販賣, 購買, 利用加工等 諸事業量은 個個組合員經濟活動規模의 總計이므로, 組合員의 經營規模와 生産活動이 곧 組合事業의 규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組合과 組合員과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알 수 있다.

1960年에서 1970년까지의 3個年동안 赤字組合이 67個組合이나 되어, 水産業의 발전과 漁民所得 增大等 漁村經濟에 적지 않는 문제가 되었으므로, 水産廳은 1967年에 「水産業協同組合의 運營改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968年에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한 것은

- (1) 自體經營能力이 없는 弱體組合을 整備·統合하여 事業의 擴充을 기한다.
- (2) 組合長과 專務와의 職務限界를 再調整하여 組合長은 管理責任者로, 專務는 經營責任者로 규정하여 組合에 대한 責任經營體制를 확립한다.
- (3) 漁村契育成으로 漁業協業化를 조성한다.
- (4) 組合의 體質改善을 위한 經營實態調査 및 教育·訓練을 강화한다.

등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 後 다시 水協의 赤字經營問題는 朴正熙大統領의 지시에 의하여 靑瓦臺에 「水協運營改善審議會」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체질개선을 위한 綜合的인 經營診斷이 이루어진 결과 單位組合과 水協中央會別로 水協體質改善方向을 지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1) 水協運營에 있어서 政府는 폭넓은 自律性을 부여한다.
- (2) 中央會의 運營委員會를 폐지하고 理事會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法改正措置를 취한다.
- (3) 不實組合을 정비하고 組合에 대한 豫算의 承認權을 水協中央會에 이양한다.

(4) 專務의 職務를 명확히 한다.

對 中央會 및 漁協勸告案

- (1) 理事會運營의 效率化를 기한다.
- (2) 不實組合을 정비하고 中央會는 現業務를 지양한다.
- (3) 企劃管理機構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自己診斷을 실시한다.
- (4) 人事管理體制를 확립하고 內部昇進制를 엄수한다.
- (5) 指導事業을 一元化하고 效率的인 指導事業을 중점 실시한다.
- (6) 信用事業은 資金需要를 명확히 파악하고 金融團에 가입한다.
- (7) 組合의 豫算.會計制度를 강화하고 經營改善을 위한 연구를 행한다.²³⁾

이러한 政府의 지시에 의해서 不實組合이 정비되었고 그 後에도 赤字組合은 정비대상이 됨으로써 1994年 現在 地區別水協은 65個組合으로 그리고 業種別水協은 17個組合, 水產製造業水協이 2個 등 總 82個組合이 되었다.

3. WTO時代의 水協組織 및 運營上의 問題點

水產業은 國內的으로는 都市化, 工業化로 인한 漁業人口가 流出되고 海洋汚染, 干拓과 埋立 등 漁場의 상실과 生産力의 저하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는 自由化와 WTO體制에 의해서 漁業의 産業으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國內外環境條件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水協은 水協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改善함으로써 環境條件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水協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는 國內外的의 각종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經營戰略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組合員과 經營者에 관한 主體的條件을 비롯하여 組織規模, 資本力 등 客觀的條件 등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구분이지 이 두가지 조건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組織面에서 보면 現在 全國의 水產業協同組合이 82個이고, 組合員이 專業, 兼業, 被傭者를 合計하면 1993年 現在 161,047名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單位組合別 組合員數는 1,963名이나 專業者만을 보면 組合員數는 647名이 되고, 專業者와 兼業者를 合計한 組合員을 보면 組合當 1,790名이 되는 셈이다.

이것을 地區別水協中心으로 보면 地區別水協이 65個, 專業, 兼業, 被傭者數를 합친것이 90,873名이므로 組合當組合員數는 1,398名이 되고, 專業者만을 보면 499名, 專業者와 兼業者를 합치면 1,216名이 된다. 水產業法에 「“漁業者”라 함은 漁業을 經營하는 者를, “漁業從事者”라 함은 漁業者를 위하여 水產動植物의 採捕 또는 養殖에 종사하는 者를, “水產製造業者”라 함은 水產製造業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23) 朴九秉, 崔正鈞, 韓國水產業團體史,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1980, p. 323.

24) 水產業法, 第2條 第4項.

위의 被傭者는 바로 漁業者를 위하여 水産動植物의 採捕 또는 養殖에 종사하는 者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 經營者는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專業이든 兼業이든 自己責任下에서 經營하는 漁業者가 1,216名이 되기는 하나, 出資에 의한 資本金과 결부시켜 볼 때 組合의 事業規模를 크게 확대시켜주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組合員이 專業, 兼業, 被傭者라고 하는 資格이 다르므로 組合에 대한 參與意識도 그만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漁民의 自主性이 희박하게 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組合經營에 있어서도 執行體制가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任職員의 資質과 能力등 시대의 環境條件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적극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組合의 財務는 組合員의 漁業經營에 의존하게 되고 漁業經營은 資源動態나 魚價 등에 의한 組合員의 漁業收入에 의존하게 되므로 組合別로 우열의 차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組合財務를 安定性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組合員의 經濟活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經營政策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水協經營의 安定的 成長은 組合員의 漁業經營의 安定的 成長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水協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規模擴大와 能率的인 運營을 위해서도 組合規模의 확대가 중요하게 되고, 構造改善事業과 地域의 行政과의 관계도 고려되어 地區別水協이 地域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水協의 事業內容은 이를 요약하면 漁業權을 保有·管理한다고 하는 기능과 組合員을 위한 經濟事業을 行한다고 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漁業權을 保有·管理하는 기능은 組合이 漁業權을 組合員에게 행사케 함과 동시에, 그러한 管理와 行使케 하는 방법을 통하여 沿岸의 地先漁場을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水協은 組合員에게 漁業權을 행사케 한다는 관계에서 資源保護와 造成, 漁場環境의 유지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水産廳은 行政指針을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야 하고, 水協中央會는 全國的, 組織的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하에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水協은 市場을 개설하고 組合員의 이익을 위하여 販賣事業, 油類, 餌料, 漁網, 漁具를 비롯한 生活資料 등의 購買事業을 실시하고 製氷事業, 冷凍, 冷蔵事業, 無線局 등 利用事業과 더불어 經濟事業을 行하고

셋째, 受信과 與信등 信用事業을 行하는 동시에

넷째, 漁村問題와 漁業問題에 관한 漁民들의 希望事項과 必要事項을 地域行政機關 및 中央에 반영하는 동시에, 政府의 水産政策을 漁民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다섯째, 業種別水協은 그 구성원이 주로 中小漁業者이고 經濟, 信用事業과 漁政活動을 행하고 있으며 漁業權·漁業許可의 保有·管理主體는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形式的이기는 하나 協同組合으로서의 水協이 본격적인 經濟事業, 信用事業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62年 4月 1日 以後부터이다. 위에서 形式的이기는 하나 協同組合으로서의 水協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水協組織이 組合員인 漁民의 自主的組織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他律的인 것이었다는

것과, 資本調達에 있어서 높은 財政資金의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1844년에 발족한 「룻지데일」(Rochdale) 協同組合의 指導原則은 民主的 自主性이 존중되고 있었으나 水協을 둘러싼 환경조건의 변화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水産業과 水協의 존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各國마다 특히 開發國에 있어서는 協同組合의 조직과 운영에 어느정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初期의 協同組合運動에는 주체로서의 組合員의 人的結合關係가 중시되었으나, 資本主義 經濟가 발전되고 獨占資本의 支配力의 強化, 都市化 및 人口增加와 더불어 協同組合의 組織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資本의 요소가 크게 중요시되게 되었다.

<表 13> 水協財政資金比率推移

年 度	財政資金構成比(%)
1963	92.3
1965	92.2
1970	69.2
1975	46.5
1980	28.3
1985	40.6
1990	41.6
1995	47.5

資料：水協中央會, 水協統計調查月告. 各년도.

이러한 여러 事情으로 인해서 水協이 外部資金 즉, 財政資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表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財政資金에의 의존도는 초기적인 것이고, 過程的으로 組合運營의 自律性을 배양할 때까지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영속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維持.存續시킨다는 것은 組合과 組合員의 自主的 發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급변하는 環境要因에 대응하기 위한 水協의 문제는 組合員의 자각이고 組合의 自主性의 회복이라 할 것이다. 自立體制의 확립과 漁業發展에 적용할 새로운 事業體制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것은 그 모두가 國內外經濟動向에 대한 洞察과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漁業制度, 漁場管理, 資源造成, 生産技術, 生産과 流通構造, 水協의 組織體系 및 運營등 광범한 漁業構造의 改善과 漁業 再編成이 필요불가결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綜合的 體系的으로 樹立.執行하기 위해서는 理論的 接近이 불가피적으로 요청된다. 水産政策과 水協運營이 民主的 時流에 편승하여 구성되는 집행부의 단순한 의욕만으로는 필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그 방향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여기에 전환기에 처한 水協과 中央會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4. 漁村契組織의 目的과 限界

漁村契는 地區別水協의 下部組織으로서 漁村의 自然部落單位로 조직되며,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은 行政區域經濟圈을 중심으로 漁村契를 조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²⁵⁾ 원래 漁村의 自然部落은 沿岸漁場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므로, 地先漁場은 전통적으로 漁民이 共同利用하는 慣行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水協이 保有·管理하는 漁業權 특히, 共同漁業權을 漁村契가 行使·管理하게 함으로써 地先漁場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의 실을 거둘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하는 면도 있는 것이다. 그

25)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6條 第2項.

리하여 漁村契를 生産法人 또는 生産組合으로서 기능케하므로써, 漁民의 所得水準을 향상시키고 漁村經濟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自然部落이 48,326個所가 되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水協調査에서 밝혀진 漁村自然部落數는 1966年이 4,262個所, 1976년에는 3,530個所로 줄어들었다. 漁村契는 그중 1970년에는 2,236個所이었다가 1994年 現在 1679個所이고 法人漁村契는 27個所가 된다.

漁村契는 漁村契員의 生産力의 증진과 生活向上을 위한 共同事業의 수행 및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²⁶⁾이 목적을 위하여

- (1) 指導事業
- (2) 漁業權의 取得 및 漁業經營
- (3) 所屬地區別組合이 享有하는 漁業權의 행사
- (4) 漁民의 生活必需品과 漁船 및 漁具의 共同購買
- (5) 漁村共同施設의 설치 및 운영
- (6) 水産物의 簡易共同製造 및 加工
- (7) 漁業資金의 斡旋 및 配定
- (8) 漁民의 厚生, 福利事業
- (9) 購買, 保管 및 販賣事業
- (10) 信用事業
- (11) 契員의 經濟的, 社會的의 利益을 도모하기 위한 團體協約의 締結
- (12) 政府 또는 水産業協同組合이 委囑하는 事業 및 補助에 의한 사업
- (13) 第1號 내지 第11號의 事業에 附帶하는 사업

(14) 기타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²⁷⁾ 등으로 되어 있다. 漁村契員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漁業生産의 증대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둘째, 漁業生産手段인 漁船, 漁具 등의 구입을 위한 水産資金의 공급에 애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첫째의 문제는 沿岸漁場의 生産力의 저하로 별로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水産資金의 공급도 資金의 효율이 떨어져 生産效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漁村契員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 漁業生産의 지속적인 증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케할 수 있는 漁場條件의 改善, 즉 漁場生産力을 높이기 위한 資源造成을 위한 대대적인 稚魚放流, 稚貝投入을 전국적으로 계속 실시해야 할 것이다.

漁村契가 地先漁場을 利用, 管理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水協法 施行令에서 法的으로 再確認되었다는 것 뿐이지 地先漁場은 그 以前에 이미 慣行的으로 地先漁民에 의해서 利用, 管理되어 왔다. 漁村契가 생기고 난 뒤에는 보다 組織的으로 漁獲努力이 강화되었고 또 강화될 것이므로 漁場의 荒廢化, 資源의 濫獲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資源造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26) 水協法施行令 第1條.

27) 水協法施行令 第16條.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沿近海漁業 특히 沿岸漁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5. 水協中央會의 組織과 運營問題

1962年 4月 1日에 88個의 地區別漁業協同組合과 14個의 業種別漁業協同組合, 1,786個所의 漁業契를 비롯하여 9個所의 水協中央會 各市道支部를 組織體系로 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가 발족하게 되었다. 社會經濟的으로나 主體的으로 組織基盤이 성숙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政府가 水協을 발족시킨 것은 協同組織을 통하여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水協의 취약한 存立基盤을 전제로 水協組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支援과 指導가 장기적으로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水協中央會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는 會員組合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共同利益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⁸⁾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事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會員組合에 대한 水協中央會의 指導監督은 社會經濟的條件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水產業을 둘러싼 國內外의 環境條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現在, 그것을 위한 中央會의 상황판단과 대처방안이 실로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中央會는 그동안 방대한 기구로 변모하였다. 그것은 34年間 水產業의 발전과 더불어 會員組合의 事業規模도 확대되었으므로 中央會의 事業規模가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이제는 中央會의 運營과 指導監督여하가 우리나라 水產業의 발전은 물론 會員組合의 운영을 좌우하여 결국에는 中央會의 運營狀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完全 開放化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水產業과 水產經營에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미치게 될 것인가. 內外環境變化에 대해서 水協中央會가 會員組合과 水產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와 대응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中央會의 效率的이고 合理的인 운영을 위한 組織機構, 資本調達, 人事管理, 指導, 調查研究등 進분야에 걸친 革新的이고 發展指向의 實踐的 方向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實踐的 方向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예로 1994년에 노출된 釜山支會와 보승支所 및 中央會의 金融事故 등은 資本이 부족한 中央會의 資本을 그만큼 감소시키고 對外信用을 추락시켰으며, 漁民의 對中央會信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가장 專門性이 요구되는 中央會長의 職責인데도 불구하고 非專門人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現制度가 빚어 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現組織機構와 人的要素를 활용하여 水產業과 會員組合 그리고 中央會自體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결정은 지극히 專門的 判斷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內外環境要因의 변화의 의미와 그 방향 및 내용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도 지극히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것은 모두 專門的

28) 水協法, 第107條.

知識과 判斷을 요한다. 단순히 선출되었다는 法的인 適法性和 그로 인한 代表性이 곧 專門性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中央會長이 任命制에서 選舉制로 변경된 것은 制度로서는 民主的이라는 의미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職責이 수행해야 하는 產業的, 社會的 比重을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長短期的 綜合的인 水産政策, 水協運營方向에 대한 專門性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여겨진다.

1994年 2月 1日 大統領直屬의 農漁村發展委員會가 발족하게 된 것은 UR安結以後의 WTO體制下에서 農水産業의 존립과 發展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격변하는 內外環境條件에 대응하여 水産業의 발전과 漁村의 綜合的 開發을 통해서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水産業과 水産經濟問題 그리고 水産科學에 관한 綜合的 知識과 理解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研究. 調查活動에 의한 현실분석과 실태파악에 입각한 專門家에 의한 政策的 提示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團體의 變遷過程을 통해서 水産業協同組合發足の 背景과 社會經濟的意義 그리고 水協組織體系의 展開過程을 고찰하는 동시에 WTO體制下에서 水産業이 존립하기 위해서 水協이 어떻게 조직·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概略的으로 언급하였다.

이미 世界經濟秩序는 開放化를 전제로 再編成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도 이 질서의 규범에 따라서 產業經濟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水産業도 그러한 의미에서 例外일 수 없다. 沿岸漁民이 조직하는 漁村契에서 地區別 水協과 業種別 水協, 水協中央會市道支會, 水協中央會라고 하는 組織體系와 水協의 經濟的 機能과 非經濟的 機能을 어떻게 效率的, 合理的으로 운영하고 발휘하여 費用을 최소화하고 生産性を 향상시켜 外國의 저렴한 水産物과 경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內外環境變化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組合員과 水協, 會員組合과 水協中央會라고 하는 관계는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이나 우선 組合과 水協中央會의 운영에 있어서 一大革新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一線 水協에 있어서도 委販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資源造成 및 漁場保護. 管理에 科學的 對應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水産政策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中央會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資源과 漁場造成은 물론 經濟事業과 非經濟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中央會의 調查·研究活動은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닥쳐올 國內外의 環境변화를 예상하여 각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長·短期政策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韓國 水産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資源枯渴, 海洋汚染등 漁場條件의 계속적 악화라는 客觀的 狀況에 대해서 漁業經營의 零細性和 漁民協同組織의 實效性低下, 水協과 水協中央會 특히, 中央會의 개방화에 따르는 內外水産問題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先導的, 指導的 役

割과 機能이라고 하는 主體的條件의 문제라 할 것이다.

水協中央會가 단순히 慣例的인 業務를 반복하는 機關에 그치게 되면, 격변하는 國際環境속에서 競爭力이 취약한 韓國水産業의 유지·존립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水産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資源造成을 통한 合理的인 漁場의 이용과 관리를 기본으로 한 漁業構造, 漁業制度의 改編등 漁業의 再編成을 위해서, 研究活動을 조장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현실타개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은 대책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속 실시함으로써 비로서 韓國水産業의 존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金仁台·朴九秉, 太和出版社, 水産經濟論, 太和出版社, 1963.
金敬浩, UR安結後의 韓國水産政策의 方向, 韓國水産經營學會, 水産經營論集, 1993.
——, 國際經濟秩序의 變遷過程, 釜山女大論文集, 1995.
金仁台, 韓國漁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研究, 水大論文集, 1969.
——, 韓國水産業協同組合의 育成方案, 水大論文集, 1971.
——, 漁業再編成의 基本問題에 관한 研究, 水大論文集, 1979.
——, 水産政策의 展開過程(二), 水大論文集 第22輯, 1979.
——, 水産政策의 發展過程(三), 水大論文集 第28輯, 1982. - 沿近海漁業의 課題와 政策方向(一) -
——, 水産政策의 發展過程(三), 水大論文集 第31輯, 1983. - 沿近海漁業의 課題와 政策方向(二) -
——, UR協商以後의 韓國水産業의 對應方案, 水産研究, 第5號, 1991.
——, GATT體制의 意義와 그 對應方法, 水産研究, 1991.
朴九秉, 水産資源의 合理的利用管理에 관한 經濟學的 研究, 水大論文集, 1979.
——, 崔正鈞, 韓國水産團體史, 수협중앙회간, 1980.
崔正鈞, 水産業協同組合의 組織 및 機能에 관한 研究, 釜山水大博士學位請求論文, 1982.
——,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관한 研究, 수산경영론집 제11권 제1,2합병호, 1980.
——, UR對備水産政策의 課題와 方向, 水産海洋教育研究, 第6卷 第2號, 1994.
水協中央會, 韓國水産業團體史, 1980.
宋丙洛, 韓國經濟論, 1992.
——, 水協長期發展計劃, 1973, 1974~1981.
——, 水協關聯改正稅法解說(1978年末 改正分), 1980.
——, 水協統計調查月報, 1994, 1995.
外務部, 世界經濟秩序와 通商外交의 方向, 1991.
農水産部, 農業通商消息 21, 24, 1992.
——, 農業通商消息 26, 27, 1993.
——, 農林水産統計年譜, 各년도.
韓國銀行, 經濟統計年譜, 各년도.
水産業法, (1953년).
水協法, (1962년).
漁業會, (1911년).
韓國 漁業法, (1908년).

수산경영론집

水産廳, 韓國의 水産, 1967.

——, 韓國水産史, 1968.

——,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各년도.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 – operatives in Korea

Kim, Kyoung – Ho

Abstract

I have outlined the history of Korean Fisheries Co – coperatives and its economic and noneconomic contribution to Korean Fisheries. But in order to overcome new economic world trend that is emerging now with the beginning of the WTO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should change itself. It can be summarlized as follows.

- (1) The early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was monopolized by Japanes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 (2) The modern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was organized in 1962. 4. 1 by Korean government.
- (3)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was weak in democratic management because of socio – economic bad condition.
- (4) In spite of the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financial aid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has contributed to the fisheries development.
- (5) At the aid of the credit undertaking economic project was enlarged greatly.
- (6) With the close of the UR talks we cannot but open out fisheries market. So we are in condition that must enforce out fisheries compatability.
especially,
 - ① Improvement of fisheries structure to enlarge management scale
 - ② Increase of productivity in fishing ground
 - ③ The continuous endeavor to positive marine resourses making
- (7) Reorganization of fisheries, for example fisheries system or fisheries structure
- (8) Reexamin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Korean Fisheries Co – operatives.
And taking a proper step to improve their weak points.
- (9) The strengthening of the activity of investigation and study in centural Fisheries Co – operatives.

수산경영론집

(10) It needs a special study to establish a new target or object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When we could solve these ones mentioned above our fisheries will develop again.